



환 경 부

수신 위해우려제품 생산/수입/판매자 귀하
(경유)

제목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시장 안전성조사 실시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환경부는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 환경부 고시 제3조에 따라 **세정제, 방향제 등 1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** 있습니다.

3. 위해우려제품을 **생산·수입하는 자**는 고시 제6조에 따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**안전기준(별표2)**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, 제품의 겉면에 **표시사항(별표2, 7)**을 표기하여 **시중에 유통**하여야 합니다.

4. 환경부에서는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기준·표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무작위 수거·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**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〈 시장안전성 조사 개요 〉

- 조사기간 : 2017.9.1~12.31(4개월)
- 조사대상 : 위해우려제품 17종(고시 별표1 참조)
 - * 경과규정이 적용 중인 인쇄용 잉크·토너는 제외
- 조사내용 : 안전기준(고시 별표2)과 표시기준(고시 별표2,7) 준수 여부
- 중점조사대상 : 개정고시(제2016-254호, '16.12.30)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품목 중심
 - 17종 스프레이형 제품 및 방향제 전 제형 : CMIT/MIT 사용금지
 - 스프레이형 탈취제 : DDAC 함량제한(섬유용 0.18%, 실내공기용 0.0015%)
 - 그 외 자동차용품, 세제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 집중 조사
- ※ 종전 고시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중에서 강화된 안전기준('16.12.30.)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경과규정 기간 동안 회수되어야 함
- 위반제품 조치계획
 -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(개선)명령 및 판매금지 등 조치명령
 - 법 제49조에 따른 고발조치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)
 - 언론 공표 및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 대상

끝.

